

인천지방법원 2022. 3. 22 선고 2020가단24846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혁

피 고 1. C

2. D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진

변 론 종 결 2021. 11. 23.

판 결 선 고 2022. 3. 22.

주 문

1. F와 피고들 사이에 2019. 9. 18. 각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각 취소한다.

2.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9. 20. 접수 제169479호로 마친 근저당권부질권
지분일부이전등기의,

나. 피고 D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9. 20. 접수 제169480호로 마친 근저당권부질권
지분일부이전등기의,

다. 피고 E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9. 20. 접수 제169481호로 마친 근저당권부질권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F는 2018. 1.경부터 2019. 7.경까지 원고 A로부터 390,000,000원, 원고 B로부터
35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이하 원고들의 F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나. F는 2019. 9. 18.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부채권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이라 한다) 중 피고
C에게 60,000,000원, 피고 D에게 70,000,000원, 피고 E에게 20,000,000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각 채권양도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9. 20.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부질권
지분이전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F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 150,000,000원과 인천
미추홀구 G 토지 및 지상건물 138,075,000원을 합한 288,075,000원으로, 소극재산인 원고들에
대한 차용금채무 740,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전에 성립된 원고들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인 F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다른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과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인 F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들은 F에게 금원을 투자하였다가 피고 C은 60,000,000원, 피고 D은 70,000,000원, 피고 E는 20,000,000원을 상당 기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들은 F가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선순위 담보권자들과 복잡한 지분 관계로 인하여 담보권실행가능성이 의문인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대물변제로 양도받았는데, 이는 피고들이 F가 이미 무자력인 것을 알고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승준

별 지 목 록

1. (토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대 3167 m².

2. (건물) 위 지상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5층

판매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1층 1492. 52m²

2층 1513. 92m²

3층 1513. 92m²

4층 1523. 42m²

5층 1523. 42m²

지하1층 2281. 78m²

지하2층 1368. 93m²

지하3층 2006. 09m²

-이 상-

